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73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천준호·민병덕·이용선

진성준 • 홍기원 • 김영배

오기형 • 이병훈 • 문정복

박홍근ㆍ기동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및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 ·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).

다만,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행위를

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7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5 호 신설).

한편,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106조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(공공재 개발사업에 한정하며, 이하 "주택공급활성화지구"라 한다)에서 건 설·공급하는 주택

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제목 중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"를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"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수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"으로 하며,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 하 "수도권"이라 한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
- 2. 사업주체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3의 제목 중 "분양가상

한제 적용주택의"를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"로 한다. 제6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·공급되는 주택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2항제1호 중 "제11조 의2제5항"을 "제11조의2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.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업주체가 「공공 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를 말한다)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 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제57조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)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 (공공재개발사업에 한정하며, 이하 "주택공급활성화지구"라 한다)에서 건설 · 공급하는 주 택 ③ ~ ⑦ (생 략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제57조의2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) 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①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나에 해당하는 주택-----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 에서 건설 · 공급하는 분양가상

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(상속 받은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"거주의 무자"라 한다)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이 하 "거주의무기간"이라 한다)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 주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외 체 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 으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⑧ (생 략)

 •		

- 1. 사업주체가 「수도권정비계 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 다)에서 건설·공급하는 분양 가상한제 적용주택
- 2. 사업주체가 주택공급활성화 지구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 <u>택</u>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~ ④ (생략)

등)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 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(입주자로 선정 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 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(매매・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하 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.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 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 다.

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3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제57조의3(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

-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② ~ ⑥ (생 략)법률 제17486호 주택법일부개정법률제10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<u>제11조의2제5항</u>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 도록 하지 아니한 자
 - 2. ~ 6. (생략)
 - ③ (생략)
 - ④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 설·공급되는 주택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법률 제17486호 주택법일부개정법률

제10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-------
- 1. <u>제11조의2제3항</u>-----
- 2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업주체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)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
	2.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
	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
	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
	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